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
----------	------

발의연월일 : 2021. 11. 22.

발의의원 : 신동윤 의원, 김은영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 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33조 → 제40조
 - 안 제4조 제3항 제1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별표6] → [별표5]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를 “제40조”로 한다.

제4조 제3항 제1호 중 “[별표 6]”을 “[별표 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0조 ----- ----- ----- -----.
제4조(여비지급) ①~② (생략)	제4조(여비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공무여행 중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준용 하여 국외 여비를 지급한다.	③ ----- ----- -----.
1. 항공운임, 준비금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별표 6]	1. ----- -----[별표 5]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여비: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